

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01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4월 일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장등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요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제3조
-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[별표2]를 신설
-가산금 부과기준 완화(부과한다⇒ 받을 수 있다)
-장애인 차량 주차요금 감면규정 정비
- 제5조:주차장법개정으로 완화된 민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 설치규정 삭제
- 제6조
-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
-수탁료납부방법중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
- 제7조(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)를 삭제함
- 제10조 : 상위법 보다 과다한 규제사항 정비(별칙⇒조치)
- 제12조 : 노외주차장 설치는 종전 신고제도에서 통보제도로 개정되어 관련내용 정비
- 제15조
-건축법시행령개정 및 주차장법시행령개정으로 관련조문 정비
-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

3. 근 거 법 령

- 주차장법 제8조,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8조
-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, 제6조

불 임 1.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구조문대비표 .끝.

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으며,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3조제3항 본문중 “노상주차장”을 “공영주차장”으로, “부과한다”를 “받을 수 있다”로, 동조제3항제1호중 “부과한다”를 “받을 수 있다”로, 제2호의 “부과할 수 있다”를 “받을 수 있다”로, 제3호의 “부과한다”를 “받을 수 있다”로 하고, 동조제4항제1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.

1.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차량중 장애인 동승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

제5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②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,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,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, 입찰에 관한 사항은 "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"을 준용한다. 다만,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중 "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." 다음에 "다만,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"를 삽입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및 제1항중 "노상주차장"을 "공영주차장"으로 한다.

제9조중 "노상주차장"을 "공영주차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중 "노상주차장"을 "공영주차장"으로, "주차를 금한다."를 "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"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"벌칙"을 "조치등"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을 "노외주차장설치신고 및 기준등"을 "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기준등"으로 하고,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며,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

제12조제2항중 "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"를 "규칙 제6조제5항에 의한"으로 한다.

제15조 본문중 “단독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용 단독주택, 다중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 및 공동주택의”를 “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”로하고, 동조 제1호중“(단,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.)”를 “(단,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)”로하며, 동조 제2호중 “공동주택”을 “다세대주택은 3세대당1대,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.)”로 한다.

[별표1]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중 월 정기 주차요금난의 “(노상주차장은 불인정)”을 삭제한다.

[별표2]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표 2]

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(단위 : 원)

구 분	당일(1회당요금)	체 류(주.야간)
중대형버스(16인승이상)	3,000	6,000
소형승용차(15인승이하)	1,000	2,000
화물차	4톤 이상	3,000
	4톤 미만	1,000
이륜차	500	1,000

<비 고>

1. 이 주차요금은 관광지 주변등 별도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.
2.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1일단위를 원칙으로 하며, 입장시 선징수 한다.
3.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은 아래와 같다.

-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으며 주차 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
<p>②(생 략)</p> <p>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. 주차수요밀집시간 주차시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%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.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400%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 	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공영주차장 받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---- 받을 수 있다. ----- 받을 수 있다. ----- 받을 수 있다.
<p>④(생 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 <p>2~5. (생 략)</p> <p>제5조(주차장의 표지) ①(생 략)</p> <p>②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,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④.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차량증 장애인 등승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<p>2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,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,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	③(삭 제) 제6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(1)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지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어 입찰에 관한 사항은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을 준용한다.
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, 표기방법,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	④(삭 제) 제6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(1)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지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어 입찰에 관한 사항은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을 준용한다. 다만,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관리수탁자가 사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여 3개월단위로 산납하여야 한다.	(2) (2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사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여 3개월단위로 산납하여야 한다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(1)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지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어 입찰에 관한 사항은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을 준용한다. 다만,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(3)~(4) (생략)	(3)~(4) (생략)
제7조(주차장의 설치허가관련) (1)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기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.	제7조 (식 제) 제7조(식 제) (1)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기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.
②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(2) (2)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8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방법) (1)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광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	제8조(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방법) (1) 공영주차장의

현 행			개 정 안		
(별표1)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			(별표1)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		
(제3조제1항 관련)			(제3조제1항 관련)		
금지구분	1회 주차요금 (1구획 10분당)	1 일 주차요금	월 정기 주차요금 (노상주차장은 별이정)		
			주 간	야 간	
1급지	300원	12,000원	-	-	
2급지	200원	8,000원	75,000원	56,000원	
3급지	100원	4,000원	45,000원	30,000원	
금지별	1회 주차요금 (1구획 10분당)	1 일 주차요금	월 정기 주차요금		
			주 간	야 간	
1급지	300원	12,000원	-	-	
2급지	200원	8,000원	75,(XX)원	56,(XX)원	
3급지	100원	4,000원	45,000원	30,000원	

<비고>

1.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.
2.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접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3.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(휴무)하며 주간요금의 징수시간은 09:00~20:00까지로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. 야간의 요금징수는 주차질서의 확립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때 까지 유보하되 징수시간 종료 1시간전부터는 주차요금을 선징수 할 수 있다.
4. 급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. 다만, 주차장의 신설등으로 인한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
 - 1급지 : 노상1지구, 노상2지구
 - 나. 2급지 : 노상5지구, 노상6지구, 노상7지구, 노상8지구, 노상9지구, 중앙시장지구, 용두천1지구, 용두천2지구, 용두천3지구, 역전주차장, 중앙교차로, 명동교차로, 역전교차로, 기타1,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
 - 다. 3급지 : 노상3지구, 노상4지구, 용두천4지구, 용두천5지구, 용두천6지구, 용두천7지구, 명동주차장, 의병교차로
5. 매 단위의 주차시간중 1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0분으로 적용한다.
6.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산정시는 각 급지별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한다.

<비고>

1.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.
2.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접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3.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(휴무)하며 주간요금의 징수시간은 09:00~20:00까지 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. 야간의 요금징수는 주차질서의 확립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때 까지 유보하되 징수시간 종료 1시간 전부터는 주차요금을 선징수 할 수 있다
4. 급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. 다만, 주차장의 신설 및 기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
 - 1급지 : 노상1지구, 노상2지구
 - 나. 2급지 : 노상5지구, 노상6지구, 노상7지구, 노상8지구, 노상9지구, 중앙시장지구, 용두천1지구, 용두천2지구, 용두천3지구, 역전주차장, 중앙교차로, 명동교차로, 역전교차로, 기타1,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
 - 다. 3급지 : 노상3지구, 노상4지구, 용두천4지구, 용두천5지구, 용두천6지구, 용두천7지구, 명동주차장, 의병교차로
5. 매 단위의 주차시간중 1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0분으로 적용한다.
6.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산정시는 각 급지별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	
(별표2)		
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		
(제3조 제1항 관련)		
구분	당일 (1회당 요금)	체류 (주.야간)
중대형버스 (16인승이상)	3,000원	6,000원
소형승용차 (15인승이하)	1,000원	2,000원
화물차	4톤이상	3,000원
	4톤미만	1,000원
이륜차	500원	1,000원
<비 고>		
<p>1. 이 주차요금은 관광지주변등 별도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.</p> <p>2.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1일단위를 원칙으로 하며, 입장시 선징수 한다.</p> <p>3.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은 아래와 같다. ○태조왕건촬영장 주차장</p>		